##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8504

제안연월일: 2025. 2.

제 안 자: 교육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가. 상정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상정		
	제2001호	정부	2024. 7.19.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24.8.2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046호	진선미의원	2024. 8.21.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2024.9.24.)		
	제4349호	백승아의원	2024. 9.26.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 (2024.11.19.)		

- 나.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12.23.)는 이상 3건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다.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5. 1. 7.)는 이상 3건 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내용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제 2항제7호).

또한 현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직업계고등학교의 내실 있는 현장실습을 위해 현장실습산업체 중 우수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우수한 기업 유인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현장실습 요건 및 취업 연계성, 직무분야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 산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 2 신설).

한편, 지난 2017년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기본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오고 있음. 그러나취업 예비단계인 현장실습의 특성상 약자인 현장실습생에게 차별적이

고 가혹한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물리적 산업재해뿐 아니라 표준협약서를 위반한 근무 강요, 폭언, 직장내괴롭힘 등다양한 형태의 위험이 존재하여 현장실습생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음.

현재 교육부는 직업계고 3학년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근로관계법을 함께 위탁교육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안전교육만 의무화되어 있음. 이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노동권 보호에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함(안 제9조의5).

법률 제 호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 중 "여성"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여성"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우수 현장실습산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우수 현장실습산업체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 감은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을 위하여 제8 조에 따라 선정된 현장실습산업체 중에서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현장실습 종료 후 취업 연계성, 현장실습 직무 분야의 전공 적합성 등 현장실습 여건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산업체를 지정할 수 있 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5제1항 중 "안전교육"을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권익보호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교육"을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권

익보호교육"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 략)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②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u>여성</u> 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7. <u>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u>					
	<u>사람을 말한다)·여성</u>					
8. • 9. (생략)	8.•9.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의2(현장실습 운영기준) ①	제7조의2(현장실습 운영기준)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에는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2. 우수 현장실습산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3. ~ 6. (현행 제2호부터 제4					
	호까지와 같음)					
<u>&lt;신 설&gt;</u>	제8조의2(우수 현장실습산업체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 및 시·					

제9조의5(현장실습 안전교육 등) 저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 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u>안전교</u>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u>안전교육</u>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있다.

<u>도</u>	교육점	감은	재호	학_	중업	<u>)</u>	직	업	亚
<u>육</u>	훈련시	생이	참¢	부하	는	현	장	실	<u>습</u>
을	위히	-여	제8	조이	) t	다리	}	선	<u>정</u>
<u>된</u>	현장	·실싙	<u></u>	업 처	] =	중에	서		<u>현</u>
<u>장</u>	실습	환경	형의	안	전성	},	현	장	<u>실</u>
<u>습</u>	종료	. 후	취약	업	연기	¶성	,	현	<u>장</u>
<u>실</u> 숙	습 직	무 -	분야	의	전-	공	적	합	<u>성</u>
<u>등</u>	현장	·실습	<u> </u>	1건	을	고	려	하	여
<u>우</u> -	수 현	장실	]습신	<u> </u>	체	를	괴	정	<u>할</u>
<u>수</u>	있다	<u>•</u>							
2	국가	. 및	지병	방지	トシリ	근치	]] -	<u>-</u>	제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현장 실습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세9조의5(현장실습 안전교육 등)
①
안전교육
<u>및 노동인권·권익보호교육</u>
②
안전교육 및 노동
<u>인권·권익보호교육</u>